

## 참고사항

### 참고1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(전문임업인, 귀산촌인)

-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
- 「산지관리법」 제44조제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(단, 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)
- 가족(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(100% 1인으로서만 매입 가능)
- 사업비 확인은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
-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정책자금 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(단,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)
-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(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)
-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
- 협회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(전문임업인에 한함)
-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 납부
- 임야 매입·임차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야 함

\*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



### 참고2 대출 유의사항

-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·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.
- 산림조합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-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,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. 선정권자(지역 산림조합장)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(대출 미실행),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,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, 연체이자 부과, 제재부금 부과, 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
### 참고3 산림분야 교육기관(전문임업인, 귀산촌인)

교육기관	위치	문의전화	
산림교육원	경기 남양주	031-570-7300 031-570-7433 031-570-7322	
한국임업진흥원	본원(서울)	02-6393-2637 02-6393-2748 02-6393-2704~5 (콜센터 1600-3248)	
	강원 평창		
	전남 남원		
	충청 부여		
경북 영주			
임업기술한마당	서울	1600-3248	
산림조합중앙회	임업인종합연수원	경북 청송	054-624-1024
	임업기술훈련원	경남 양산	055-382-7247
	임업기계훈련원	강원 강릉	033-662-5442
	임업기능인훈련원	전북 진안	063-433-6884
	산림버섯연구센터	경기 여주	031-881-0231
한국임업후계자협회	대전	042-626-6969	
한국산림경영인협회	대전	042-586-2986	
한국산림아카데미	대전	042-471-9963	
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	경기 양평	031-771-5955	
한국조경수협회	대전	042-822-5793	
경상대학교(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)	경남 진주	055-772-1835 055-772-1818	
충북대학교(산림과학교육센터)	충북 청주	043-261-3448	
순천대학교(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)	전남 순천	061-750-3221 061-750-3909	
강원대학교	산림과학연구소	강원 춘천	033-250-7226
	농촌사회교육원	강원 춘천	033-250-7187~8

### 참고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

1) 「농수산신용보증법」에 따른 보증대상자는 「산림조합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통해 보증실시

-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-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중요생산업자
-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(圃地)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
-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
-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
-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
-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
-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

2) 보증비용

- 대상자에 따라 임업인 80~85%, 임업후계자·귀산촌인 90%이나, 사전·사후대출, 시설·운영자금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. 잔여 10%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(부분보증제도 운영)

3) 산림육장 등 산림휴양복지시설(“서비스업” 해당 시설)은 보증대상에서 제외



# 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 (용자) 안내서



## 사업개요

### 사업목적

-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여 산림사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임가소득 증대 및 임업경제 활성화

### 2018년도 융자규모 및 조건

(단위 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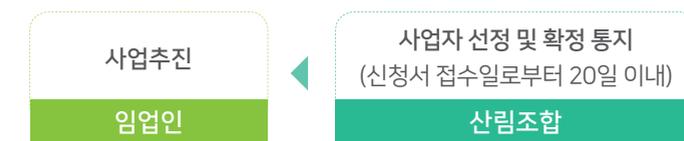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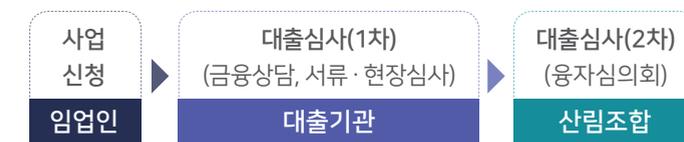
구분	융자조건				'18년
	기간(년)		금리(%)		
	거치	상환	고정	변동	
총 대출규모	-	-	-	-	1,290
① 산림경영기반조성	5~20	5~15	1.0~2.0	-	347
- 전문임업인기반조성	5~20	5~15	1.0~2.0	-	340
② 사립휴양시설조성	10	10	3.0	적용	14
③ 산양삼 생산	10	5	2.0	적용	19
④ 해외산림자원개발	2~25	3	1.5	-	160
⑤ 단기산림소득지원	3~5	2~7	2.0	적용	240
⑥ 조림용 목목생산	3	2	2.0	적용	12
⑦ 목재이용활성화지원	2~3	2~7	3.0	적용	52
⑧ 산림조합육성	3	2~7	3.0	적용	6
⑨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	5	10	2.0	-	340
⑩ 임업인경영자금지원	1	1	2.5	적용	100

\* 변동금리 : 대출시점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경

### 대출 신청

- 신청시기 : 연중 수시(3월부터 신청 가능)
- 신청기관 : 해당 지역 산림조합(사업장 소재지)
-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임업후계자 증서,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증명서류

### 대출 절차



## 사업대상자

- 독립가,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- \*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(2019. 1. 1부터 적용)



## 지원자격 및 요건

-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이후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(참고3)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한 자(시간제한 없음). 단, 당해연도 내에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수 전 대출 가능
- \*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- 사업자는 개인(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)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, 사업비 산출근거,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(임야매입자금에 한함) 등

## 사용용도 및 범위

- (장기수) 장기수 ·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, 유실수 · 조경수의 생산 자금 (임야매입 · 임차 가능)
- (임도시설) 임도의 신설 및 보수
- (사립휴양시설)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(임야매입 · 임차 가능)
- (단기산림소득지원) 종자 · 종묘, 임산물 생산 · 재배를 위한 시설 · 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· 재배 · 유통 · 가공 · 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(임야매입 · 임차 가능)

(단위 : 년, %)

구분	융자기간		금리	융자한도
	거치	상환		
전문임업인기반조성	-	-	-	• (독립가) 사업자당 3억원 이내 • (그외) 사업자당 2억원 이내
① 장기수사업	20	15	1.0	
② 임도시설	20	15	1.0	
③ 사립휴양시설	20	15	1.0	
④ 단기산림소득지원	5	10	2.0	

## 사업대상자

-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
- \* 귀산촌 : 행정구역 상 동(洞) 지역에서 읍 · 면(邑 · 面) 지역으로 이주
- \*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(2019. 1. 1부터 적용)

## 지원자격 및 요건

- ① 이주기한
  - (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) 산촌지역 전일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- (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, “예비귀산촌인”) 산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일반인,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
- ② 거주기간
  - 전일일을 기준으로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
  - \* 단,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,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

## ③ 교육이수 실적

-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(귀산촌 교육 포함)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%를 인정(교육 수료증 제출 시 인정)
- \* 단, 임업인,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, 임업계열 학교(고등 · 대학교) 졸업자,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\*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 · 묘목, 임산물 생산 · 재배시설, 임업기계장비,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

-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

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(창업에 한함)

- \* 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 · 초본 1부(주소 이력 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,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기타 증빙자료

## 사용용도 및 범위

- 임산물 생산 ·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
  - \* 임산물 생산 · 재배 · 이용 · 가공 · 유통 · 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임야 매입 · 임차, 재료 구입, 시설의 설치 및 기계 · 장비 구입 · 임차, 생산 체험장 설치,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
-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
  - \*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임야 매입 · 임차, 시설의 신축, 조성 및 개보수 및 기계 · 장비 구입 · 임차, 기타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 복지전문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

(단위 : 년, %)

구분	융자기간		금리	융자한도
	거치	상환		
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	5	10	2.0	(창업) 세대당 3억원 (주택) 세대당 75백만원 * 목조주택 1억원

## 지원제외 대상

-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(專業的) 직업을 가진 자(상근근로자)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. 단, ① 농 · 수산업 겸업, ② 임업(농업 포함) 외 연소득 3,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
- 농림축산식품부 “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” 사업을 지원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 “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” 사업을 지원받은 자
-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세부내용 “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” 참고



# 임업인 경영자금



## 사업대상자

- 임업인(경영체 또는 법인 포함)

## 지원자격 및 요건

- 산림경영, 임산물(목재 포함) 생산,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

## 사용용도 및 범위

- 산림경영, 임산물(목재 포함)의 생산 · 이용 · 가공 · 유통 · 보관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(경영체 또는 법인 포함)의 경영비
  - 지원대상 임업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
  - 토지 임차료(단,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)
  -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 · 대환하는 경우
-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,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

(단위 : 년, %)

구분	융자기간		금리	융자한도
	거치	상환		
임업인경영자금	1	1	2.5 또는 변동	10백만원 이내 (사업비의 100%)

## 사업대상자

-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

## 지원자격 및 요건

-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에 따름

## 사용용도 및 범위

- 임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· 장비 및 재배 · 운영에 필요한 자금
- 조경수 생산 · 유통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- 분재 생산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
- 임산물 가공시설의 신 · 증설 및 교체
-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(저온저장고 · 건조장 건축비, 단열공사, 저온기계설비 등)
-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및 임산물 수집 · 구매 자금
-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발, 표준출하 및 공동선별비 등
- 유통차량 및 파레트, 운반용 상자 등

(단위 : 년, %)

구분	융자기간		금리	융자한도
	거치	상환		
단기산림소득지원	-	-	-	2.0 또는 변동 사업비의 80~90%
① 임산물 생산	3	2~7		
② 조경수 생산	5	5		
③ 분재 생산	5	5		
④ 가공시설	3	7		
⑤ 저장 및 건조시설	3	7		
⑥ 판매 및 수집수매	3	7		
⑦ 상품화	3	7		
⑧ 유통기반 조성	3	7		

## ※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

종류	품목명
수 실 류	밤, 감, 잣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 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
버 섯 류	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
산 나 물 류	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영경귀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
약 초 류	삼지구엽초, 삼주, 참속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
약 용 류	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 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율나무, 꿀담초, 산겨릅나무, 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활살나무, 목단
수 목 부 산 물 류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관상산림식물류	야생화, 자생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